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101340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14. 9. 19.

판결 선고2014.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137,4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0%를 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면서 3억 원을 2013. 11. 20., 7억 원을 2013. 11. 29., 10억 원을 2013. 12. 20., 13억 원을 2014. 1. 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3억 원 중 2,832,862,5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7,137,440원(= 33억 원 - 2,832,862,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2014. 9.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발행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은 의제배당소득이 된다. 그 결과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467,137,440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실제로 이를 아산시에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자진납부한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나. 관련 법리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3.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경영에 관여해왔다. 피고 발행주식 중 2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C, C의 처 D, C의 처남 E가 각 보유하고 있다(E 보유 피고 발행 주식은 2013. 11. 20.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아직 그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C와 아래와 같이 다툼을 벌여왔다.

○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34호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 위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 중 1인이었던 원고는, C가 피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피고의 자금을 유용한 점, C가 피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점, C가 피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상당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서 그 동안의 회계감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 2013. 6. 24.자 통고서(갑 제4호증의1)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진은, 피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이종원재료 또는 재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에어백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중단 및 원고의 지분을 정당한 시가로 매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 2013. 7. 9.자 제보 및 2013. 8. 22.자, 2013. 8. 30.자 회신(갑 제4호증의2, 3, 5)

법무법인 정진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게 피고가 납품하는 에어백 부품에 이종원재료 또는 재활용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제보하였다.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2013. 8. 30.자 통고서(갑 제4호증의4)

법무법인 정진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에어백 원재료와 관련한 문제점의 시정 촉구 및 피고가 공장용지 개발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점, C의 이익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점, 그와 같은 비자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3)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지분 가치를 33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정진은 2013. 12. 3.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갑 제5호증)를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4. 1. 17. 법무법인 정진에게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결국 2014. 1.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27억 원만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잔금 6억 원의 지급을 지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 정진으로부터 2014. 2. 25.자 이행촉구서를 받게 되었다.

5) 위 이행촉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귀하는 소각방식을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으나 본 주식계약합의시 대리인 사이에서 소각 방식이 나닌 단순자사주 매입을 전제로 짧은 이행기일을 정하였던 것임은 F 변호사와 C대표님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6) 피고는 위 이행촉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달 후인 2014. 3.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보유 피고 발행 주식 전부를 33억 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그 결의에 참석한 주주 3인은 C, D, E인 것으로 보인다), 2014.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되, 이를 인수한 후 즉시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하였다(그 결의에 참석한 이사는, 대표이사 C, 사내이사 G, H이다. 그런데 G은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바로 그날에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이다).

7)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2. (제2문) 위 금액(33억 원)의 산정은 제1항의 매도인의 주식소유비율(20%) 및 경영권프리미엄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3. (제1문) 피고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매수인(연대보증인 포함)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

8) 피고의 2012.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2,987,000,000원, 2013.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8,927,000,000원이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는 피고의 경영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법률적, 사실적인 다툼을 벌여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원고는 종전부터 주장하던 피고 발행 주식의 매도라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피고 역시 안정된 경영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날짜에 대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체결일인 2013. 11. 19.부터 2014. 1. 15.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에 그 목적을 다하고 마쳐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취득으로 보아 상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기간 안에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실제 피고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4. 3. 25., 2014. 3. 27.이었다), ③ 피고가 33억 원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법무법인 정진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2014. 1. 17.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 피고는 다소 시기에 늦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함이 없이 원고에게 합계 27억 원을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사후적인 피고 이사회 결의로써 변경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의 2012.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따르면, 피고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충분히 원고가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C 사이의 피고 경영에 관한 다툼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C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 거래(주식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것이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하는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고지은

판사백우현